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41470(본소), 2020나949(반소) 판결 [주식인도 청구의 소 · 매매대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41470(본소), 2020나949(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가단5203176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임동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1. B

피고, 항소인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한광현, 조성호

변론 종결2020. 6. 10.

판결 선고2020. 7. 8.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가단5203176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D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가. 본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임을 확인한다.
- 나.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는 당시에 이르러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 12. 20. 성립된 전기자동차 수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원고는 2018. 1.경 피고 B에게 원고가 소유하던 소외 회사의 주권발행 전 주식 10,000주 가운데

8,000주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18. 2. 3. 피고 B로부터 그 대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소외 회사의 주권발행 전 주식 5,500주를 인도하였으며, 나머지 2,500주는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C에게 2,000주, 피고 D에게 500주를 각 인도하였고, 위 각 주식에 대하여 피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8. 7. 23. 발행주식의 액면가를 10,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는 액면분할을 실시하였고, 액면분할로 보유 주식 수가 20배 증가한 피고들의 보유내역은 별지 주식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대금 액수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대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50,000,000원으로 정하였다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일관하여 대금 100,000,000원 중 미지급된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던 점, ② 피고 B, C 역시 원고 발신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대금이 "총금액 일억원"이라고 기재한 답변서를 스스로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1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제1심 증인 F의 증언은 피고 C으로부터 나중에 전해 들었다는 취지에 해당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대금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지급받고(이하 '선금'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주권발행 전 주식 8,000주를 모두 인도하였으며,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피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나머지 잔금

50,000,000원(이하 '잔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2018. 8. 및 2018. 9.경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그 지급을 독촉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 B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른 해제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18. 10. 5.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위 2018. 10. 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지급한 선금 외에 나머지 잔금은 '차량 수입 후 정부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환경부 등록 및 판매' 등의 조건이 성취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참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대금 100,000,000원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먼저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의 핵심요소인 잔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조건이 있었다고 선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은 위 조건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조건 미성취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설령 이 사건 매매대금이 100,000,000원이고 위와 같은 조건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잔금을 스스로 출금할 권한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출금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의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인 원고에게 잔금 상당액을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할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와 채무자인 피고 B의 이행지체 여부는 서로 무관한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이 사건 각 주식의 복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피고 B에게 이전되었던 소외 회사의 주권발행 전 주식은 원고에게로 복귀하였다. 나아가 피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 경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앞서 피고 B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던 피고 C, D은 피고 B를 대신하여 그와 같은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C, D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C, D에게 이전되었던 소외 회사의 주권발행 전 주식 역시 원고에게 복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주식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2018. 10. 5. 원고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는 원고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피고들은 위 해제에 따라 원고가 선금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동시이행항변의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이행의 소가 아니라 확인의 소에 해당하고, 확인의 소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선금 50,000,000원을 피고 B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취지 참조),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B가 지급한 선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선금의 지급일 이후로서 피고 B가 구하고 있는 2018. 10. 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B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판사김우현

판사허일승

판사신한미

별지